



안전한 학교, 든든한 대학 지킴이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안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개



설립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이 2007년에 설립하였습니다.”



사업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 제1항제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공제중앙회 주요업무

- 학교배상책임공제(17개 시, 도 유치원 및 학교* 전부 가입) 사업 운영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안전공제사업 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단체, 수련시설) 안전공제사업 운영
-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 학교안전사고 예방 실태조사, 안전교육자료 개발 및 각종 연수 실시
- 학교안전공제보상 재심사위원회의 운영
- 대학정보공시 항목별(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사고 보험(공제)현황) 관리 기관
- 교육부 학교안전정책 연계사업 지원
- 학교안전강화사업 등 특별교부금 위탁사업 수행



대학 공제 사업 장점

공익성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공제료

- 판매 수수료 등 높은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은 공제료

※ 동일 보장의 경우 : 민간 대비 학생 1인당 약 740원 ~ 840원 예산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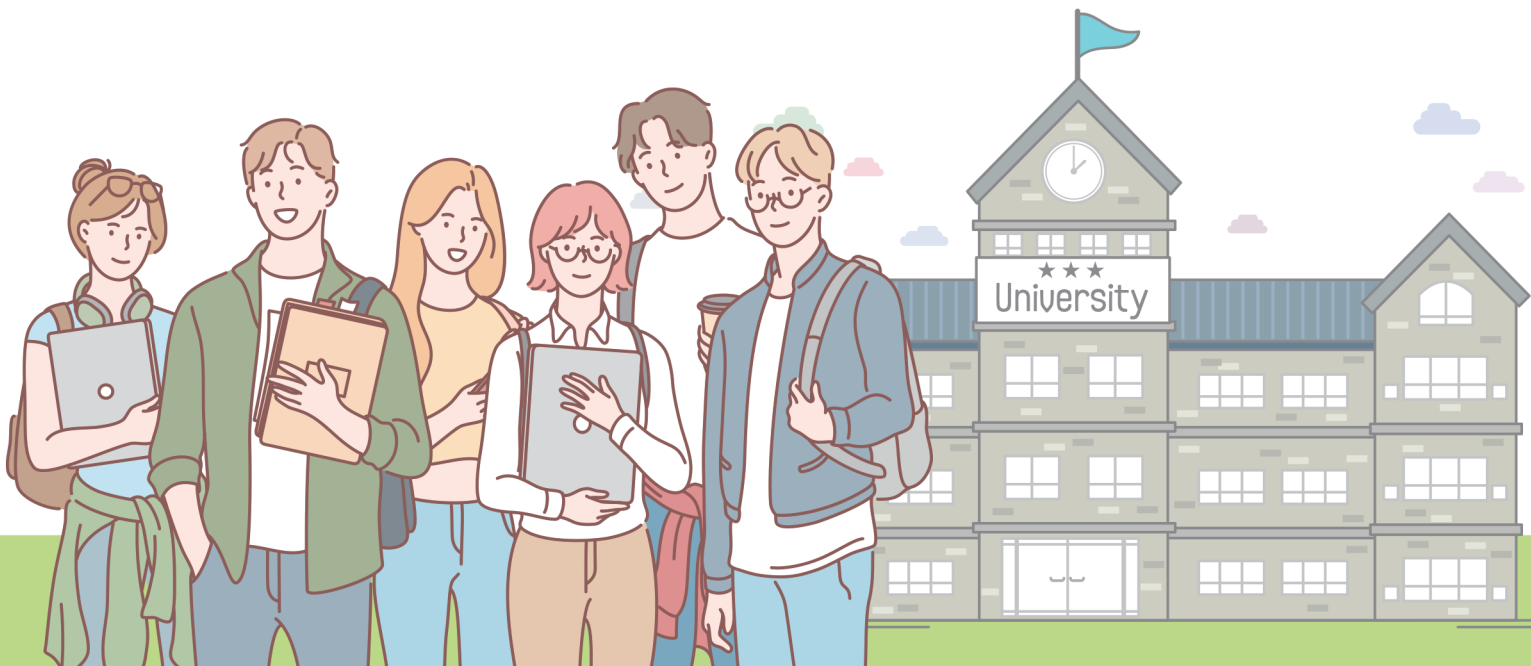
[1인당 공제료 예시(대학 평균 가입 한도로 가입시)]

구분	1인당 공제료		
[대인배상]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중앙회 2,310원	A보험사 3,050원 (△740원)	B보험사 3,150원 (△840원)
[대물배상] 1사고당 1억원 (대인, 대물 자기부담금 10만원)			
[학생 및 신입생 교내치료비] 5백만원(자기부담금 없음)			

※ 가입 사항에 따라 공제료 변동

대학 담당자의 업무 편의 제공

- 대학공제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한 사고 처리 진행사항, 공제급여 지급 내역, 가입 이력 조회 가능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특별약관

- 학교장의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인하여 학교장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통약관)
- 대학생이 학교생활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 치료비 또는 그 손해가 원인이 되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장해·유족급여(특별약관)
- 신입생이 학교행사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 치료비 또는 그 손해가 원인이되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장해·유족급여 (특별약관)



보장 담보	가입 금액			보장내용
	1인당	1사고당	자기 부담금	
대인배상	1천만원~2억원	1천만원~5억원	10만원~1백만원	피공제자(대학 총장)의 제3자(학생 포함)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대물배상	-	1천만원~5억원	10만원~1백만원	
교내·외 치료비	1백만원~5백만원		10만원~50만원	학생 상해 치료비
학교생활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1천만원~2억원	5억원	-	학생 장해 및 사망공제급여
신입생OT 중 치료비	1백만원~5백만원		10만원~50만원	신입생의 상해 치료비
신입생 OT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1천만원~2억원	5억원	-	신입생장해및사망공제급여

※ 학교경영자배상책임(대인·대물배상) 보장은 필수 가입이며 그 외 보장 특약들은 선택 가입 가능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통약관

구분	내 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가입자 및 학교 소속 근로자(조교, 시간강사를 포함한다)가 학교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애 또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 ● 공제가입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한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용 이동장치를 포함한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다만, 학교시설의 훼손·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한다) ● 학교 교직원(강사, 조교 포함)의 배상책임 또는 학생의 개인적인 배상책임 ●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체육특기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한 연습, 훈련,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공제급여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공제자 또는 제3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공제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 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 ● 피공제자 또는 제3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을 상계하여 지급(다만, 인지능력의 현저한 부족, 신체적 결함 등의 원인으로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음)

특별약관

구분	내 용
담보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용 이동장치를 포함한다) 사고
학교생활 중 상해사망· 후유장애 / 신입생 OT 중 상해사망· 후유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사고 ● 피공제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한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수상보트, 수영, 스키, 수상스키, 승마 또는 이와 유사한 위험 활동

※ 상기 내용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약관 참고

대학 현장실습생보상공제



보상하는 손해

현장 실습생이 실습 중 사고로 발생한 신체피해 및 제3자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인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보통약관)

보장 담보		가입 금액			보장 내용
		1인당	1사고당	자기 부담금	
실습생 배상책임	대인	50만원 ~ 5백만원		2만원	현장실습생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대물				
현장실습생 치료비		1백만원 ~ 1천만원		10만원 ~ 50만원	현장실습생의 상해 치료비 (산재보상 초과손해 지급)
현장실습생 상해사망·후유장해		1천만원 ~ 2억원	5억원	-	현장실습생 장해 및 사망 공제급여

※ 현장 실습생 배상책임, 치료비,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담보는 일괄 가입만 가능 (보장 선택 가입 불가)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통약관	
구분	내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그 밖에 유사법률에 따라 보상되는 치료비 또는 손해배상책임 현장실습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실습기관(장)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공제급여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공제자 또는 제3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공제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 피공제자 또는 제3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을 상계하여 지급 (다만, 인지능력의 현저한 부족, 신체적 결함 등의 원인으로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음)

※ 상기 내용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약관 참고

가입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가입 절차

1 가입 전 공제료 문의(대학 → 공제중앙회)

※ 유선(02-6410-5052 / 5050), 메일(daehak@ssif.or.kr)로 문의해주시면 '공제료 산출 요청서'를 메일로 발송해드리며 공문으로 요청서를 발송해주시면 공제료를 안내드립니다.

2 가입 요청 공문 발송(대학 → 공제중앙회)

3 가입 승인 공문 발송(공제중앙회 → 대학)

※ 공제료 납부는 계좌이체로 가능합니다.



공제급여 청구 절차

관계자	절차	업무처리
피공제자, 제3자	사고 발생	· 대학안전사고 발생
학 교	사고 통지	· 대학안전공제 업무처리시스템에 사고통지
공제중앙회	사고 접수	· 사고통지서 접수(중대사고 시 전문손해사정조사자의 현장조사 실시)
피공제자, 제3자	치료·수리	· 병원 치료 및 파손 물품 수리 진행
학 교	공제급여 청구	· 대학안전공제 업무처리시스템에 공제급여청구
공제중앙회	청구 접수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지급 완료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 내역 공문 통보
피해자	심사청구	· 공제중앙회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학교안전공제중앙회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 주소_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6 고려빌딩 6층
- 홈페이지_ www.ssif.or.kr
- 공제 문의_ 02-6410-5052, 5050 / daehak@ssif.or.kr